

송변전분야 계약 특수조건



2024. 12. 19 제 정

F4-4D-30-A2-D7-23 / 13103801 / 2024-12-19 15:37:25
KEPCO

전력계통본부
송변전운영처

차 례

제1조 목 적	1
제2조 정 의	1
제3조 적 용	2
제4조 정전고장 및 설비피해 보고 등	2
제5조 고장규모별 등급 구분	3
제6조 작업과실로 고장, 설비피해 등 유발 시 제재기준	3
제6조 제재심사위원회 개최	6
제8조 제재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재등급 판정위원회 개최	7
제9조 은폐시 제재 가중제도	8
제10조 제재 경감제도 운영	9
제11조 기타	10
【별표1】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	11
【별표2】 보안유지 및 비밀준수 서약서	12
【별표3】 직무윤리 서약서	13
【별표4】 회의록 양식	14

F4-4D-30-A2-D7-23 / 13103801 / 2024-12-19 15:37:25

제1조(목적) 이 송변전분야 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전력공사(이하 '당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를 포함한 자재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작업과실 고장 유발시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 대한 제재기준 내용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과실"이란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아래 각 호를 말한다.

가.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시공불량(부실시공), 오조작, 무단작업, 표준 작업절차 미준수, 시공품질관리 미흡 등 과실을 유발한 경우

나. 상기 원인 이외라도 인적요인으로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고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설비운영에 문제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고장"이란 아래 각 호를 말한다.

가. "정전(정전고장)"이란 고객에게 전력 공급이 중단된 고장을 말한다.

나. "무정전(무정전고장)"이란 고객에게 전력 공급이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송·변전설비 중 주설비나 부속설비의 운전 또는 기능이 정지된 것을 말한다.

3. "작업과실 고장"이란 아래 각 호를 말한다.

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의 작업과실로 인해 발생한 정전 또는 무정전 고장

나. 시공회사가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계약된 해당공사 현장시공·점검·시험 중 발생한 작업과실 고장을 말한다. 이때 시공회사는 당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시공하는 모든 회사를 포함한다.

다. 감리회사가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계약된 해당공사 감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작업과실 고장을 말한다.

라. 기자재 제작사가 계약상대자인 경우에는 기자재 설치조건부 공사현장 또는 변전기자재 슈퍼바이저 파견현장에서 시공·점검·시험 중 발생한 작업과실 고장을 말한다.

4. “공사종류”는 공사별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시공회사 : 가공송전공사, 송전협력회사공사, 지중송전 협력회사 공사, 지중송전 시공 전문회사공사, 변전전문회사공사, 변전협력회사공사, 그 외는 송변전 기타공사로 분류한다. (전력구 부대설비공사, 변전 일반도급공사 등)

나. 감리회사 : 가공송전공사 감리용역, 가공송전 협력회사공사 감리용역, 지중송전선로공사 감리용역, 변전공사 감리용역, 변전감리협력회사 용역

다. 제작사 : 품목별 기자재공급자 유자격으로 구분

-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 전기 안전관리규정, 송변전고장관리기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등 분야별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 및 소속 근로자가 계약기간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작업과실 또는 작업과실 고장을 유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는 별도로 이 조건에 따라 제재한다.

(감리용역의 경우 계약기간부터 감리대상인 전력시설물의 기자재 및 감리를 시행한 공사·용역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 ② 제2조의 작업과실, 작업과실 고장 또는 제3조의 1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는 각 분야별 업무처리기준 등을 따른다.

제4조(정전고장 및 설비피해 보고 등)

- ① 계약상대자는 정전고장, 설비피해, 또는 작업과실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당사에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설비상태 파악 및 복구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2차 사고를 고려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 및 관련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보존 및 증거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그 외 사항은 관련 당사 규정 및 절차를 따른다.

제5조(고장규모별 등급 구분)

- ① 송변전 정전고장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고장규모별로 다음과 같이 A, B, C등급으로 구분한다.
- ② 작업과실에 대한 경각심 부여를 위해 정전고장이나 설비피해가 없는 작업과실은 D등급으로 구분한다.

구분	고장 규모
A등급 (파급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전소 전면정전 (정전시간 무관) • 동시정전 15,000세대 이상 5분 이상의 정전사고 • 공급지장전력 3만kW 이상으로 정전시간 5분 이상인 설비고장
B등급 (파급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정전 8,000세대 이상 5분 이상의 정전사고 • 공급지장전력 3만kW 미만으로 정전시간 5분 이상인 설비고장 • 345kV 이상 송전선로 고장으로 인해 정전이 발생한 경우 (정전시간 무관)
C등급 (파급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정전 1,000세대 이상 1시간 이상의 정전사고 • 동시정전 4,000세대 이상 5분 이상의 정전사고 • 공급지장전력 3만kW 미만으로 정전시간 5분 미만인 설비고장 • 345kV 미만 송전선로 고장으로 인해 정전이 발생한 경우 (정전시간 무관)
D등급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이나 설비피해는 없으나 작업과실이 발생한 경우 * 예시) 휴전된 설비를 무단조작, 신설배전반 오결선, 활선철탑 승탑시도 등

E4-4D-30-A2-D7-23 / 13103801 / 2024-12-19 15:37:25

제6조(작업과실로 고장, 설비피해 등 유발 시 제재기준)

① 시공회사 제재

1. 계약상대자(회사) : 당사에서 운영중인 제도를 통해 자격을 발급받는 전문회사 공사, 연 단위로 계약하는 협력회사공사(위탁회사공사), 그 외 모든 발주공사 등 공사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단, 가공송전 위탁회사공사(KPS 수의계약)의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전문회사공사	자격취소 (2년간 신규등록 불가)	자격정지 1년 (입찰제한 1년)	자격정지 6개월 (입찰제한 6개월)	누적시 제재 (제6조 ④항)
협력·위탁회사공사	입찰제한 1회 (2년간 참여불가)	입찰제한 1회 (2년간 참여불가)	경고 (위약벌 부과)	
그 외 공사	입찰제한 2년	입찰제한 1년	입찰제한 6개월	

※ 제재(자격취소, 입찰제한)는 해당 공사종류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근로자(인력) : 제재는 당사에서 운영중인 제도를 통해 자격을 발급받는 인력과 그 외 일반인력을 구분하여 적용하며,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는 현장작업 투입여부와 관계없이 제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시 : 변전전문회사 품질 안전관리전문위원). 단, 제재는 작업과실을 행한 인력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자격발급 인력	자격취소 및 참여제한 2년 (2년간 재등록 불가)	자격정지 1년 및 참여제한 1년	자격정지 6개월 및 참여제한 6개월	누적시 제재 (제6조 ④항)
그 외 인력	참여제한 2년	참여제한 1년	참여제한 6개월	

※ 제재(자격취소, 참여제한)는 해당 공사종류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위약벌 : 당사가 부과하는 위약벌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매 1건당 적용한다.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위약벌 기준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5%	계약금액의 1%	누적시 제재 (제6조 ④항)
부과한도	최소 200 ~ 최대 2,000만원	최소 150 ~ 최대 1,500만원	최소 100 ~ 최대 1,000만원	

※ 계약금액은 공사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항목이 동시에 2건 이상 발생된 경우 고액항목 1개만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비피해에 대한 손해금액과 정전에 의한 피해보상은 별도로 당사에 납부해야한다.

E4-4D-30-A2-D7-23 / 13103801 / 2024-12-19 15:37:25

② 공사감리(감리회사) 제재

1. 계약상대자(회사) : 연 단위로 계약하는 감리협력회사, 그 외 개별발주 감리 용역 등 공사종류에 따라 적용한다.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개별발주 감리용역	입찰제한 2년	입찰제한 1년	입찰제한 6개월	누적시 제재 (제6조 ④항)
협력회사 감리용역	입찰제한 1회 (2년간 참여불가)	입찰제한 1회 (2년간 참여불가)	경 고 (위약벌 부과)	

※ 제재(입찰제한)는 해당 공사종류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근로자(인력) : 작업과실을 행한 인력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감리원	즉시 교체 (2년간 투입 불가)	즉시 교체 (1년간 투입 불가)	즉시 교체 (6개월간 투입 불가)	누적시 제재 (제6조 ④항)

※ 제재(즉시교체, 투입불가)는 가공송전/지중송전/변전분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예시 : 변전공사 감리용역 중 작업과실유발 감리원은 변전감리협력회사 용역에도 투입 불가)

3. 위약벌 : 당사가 부과하는 위약벌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매 1건당 적용한다.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위약벌 기준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5%	계약금액의 1%	누적시 제재 (제6조 ④항)
부과한도	최소 200 ~ 최대 2,000만원	최소 150 ~ 최대 1,500만원	최소 100 ~ 최대 1,000만원	

※ 계약금액은 감리용역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항목이 동시에 2건 이상 발생된 경우 고액항목 1개만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비피해에 대한 손해금액과 정전에 의한 피해보상은 별도로 당사에 납부해야한다.

③ 기자재공급자(제작사) 제재

1. 계약상대자(회사) : 해당품목별로 적용한다.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해당품목 공급자 유자격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개월	누적시 제재 (제6조 ④항)

2. 근로자(인력) : 작업과실을 행한 인력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변전공사 슈퍼바이저 해당)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슈퍼바이저	자격취소 (2년간 재등록 불가)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개월	누적시 제재 (제6조 ④항)

3. 위약벌 : 당사가 부과하는 위약벌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매 1건당 적용한다.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위약벌 기준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5%	계약금액의 1%	누적시 제재 (제6조 ④항)
부과한도	최소 200 ~ 최대 2,000만원	최소 150 ~ 최대 1,500만원	최소 100 ~ 최대 1,000만원	

※ 계약금액은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변전공사 슈퍼바이저의 경우에는 파견비용 실비를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상기 2건의 위약벌은 각각 별도로 적용한다.

※ 항목이 동시에 2건 이상 발생된 경우 고액항목 1개만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비피해에 대한 손해금액과 정전에 의한 피해보상은 별도로 당사에 납부해야한다.

④ D등급 제재 : 정전이나 설비피해는 없으나 작업과실이 발생한 경우 경고를 부여한다. (예시 : 휴전된 설비를 무단조작, 신설배전반 오결선, 활선철탑 승탑 시도 등)

1. D등급 누적시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 적용한다.

누적횟수	3회	5회	7회
제재적용	C등급	B등급	A등급

2. 누적횟수는 제재 적용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한다. (D등급 3회 누적시 C등급 제재 → 2회 추가 발생시 5회 누적으로 B등급 제재)

3. 마지막 작업과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작업과실을 유발하지 않은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 대해서는 D등급 누적횟수를 0회로 Reset한다.

※ 계약상대자는 고장규모 D등급인 경우에도 설비피해에 대한 손해금액과 정전에 의한 피해보상이 발생하게 되면 별도로 당사에 납부해야한다.

⑤ 동일고장 건에 대해 2개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작업과실 또는 고장을 유발한 경우 손해금액·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분담비율을 책정하여 당사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 간 협의 지연으로 금융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비용을 포함하여 분담비율을 책정한다.

⑥ 위약벌 부과사항 발생시 공사발주부서장 또는 공사발주사업소장은 제7조 제재심사위원회 결과와 함께 발생 내용을 계약담당부서로 통보하고, 계약담당부서는 다음과 같이 설비고장 위약벌의 수납 조치를 취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1. 해당 공사대금 지불시 공제
2. 설비고장 위약벌을 부과하여야 할 설비고장이 공사비 지불 후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월에 지불되는 공사비에서 공제
3. 공사비 지불 건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로 하여금 입금하도록 조치
4. 회계처리는 지체상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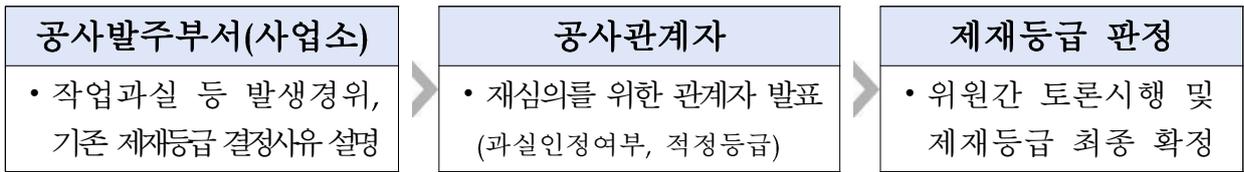
제7조(제재심사위원회 개최)

- ① 제재사유 발생시 당사 공사발주부서 또는 공사발주사업소는 2주 이내에 제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등급을 결정한다. 위원회 구성 등은 각 분야별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제재절차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이 조건 제8조 제재등급 판정위원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제재적용일은 당사 제재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날짜를 적용한다.
- ③ 단, 정부/당사 고장조사반 운영 등 고장원인 분석이 2주 이내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장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1. 이 조건의 제재기준은 공사발주부서 또는 공사발주사업소의 조사 결과 계약상대자측 근로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측 근로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명백하고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제재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 제재심사위원회를 통해 제재등급 확정시 공사발주부서는 또는 공사발주사업소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제재사실을 통보하고, 제재사실 통보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계약담당부서에 “계약상대자 제재사실 통보서”를 통보한다.
 - 제재에 대한 후속관리는 각 분야별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8조(제재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재등급 판정위원회 개최)

-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제7조의 제재심사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재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영업일기준 5일 이내에 제재등급 판정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당사 공사발주부서 또는 공사발주사업소로 공문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8조 ①항에 따라 제재등급 판정 심의자료를 제출받은 당사 공사발주부서 또는 공사발주사업소는 제재등급 판정위원회를 통해 제재등급을 재심의한다.
 1. 개최시기 : 제재등급 판정 심의자료를 제출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2. 구 성
 - 위원장 : 공사발주사업소장 (전력관리처장, 전력지사장)

- 심의위원 : 6명 (사외위원 50% 이상), 임명은 사내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며 사외위원은 무작위 추출
 - 간 사 : 공사발주부서 또는 공사발주사업소 담당차장
3. 임 무 : 공사관계자(업무담당자, 시공사, 감리사, 제작사 등) 입장 청취 및 제재등급 토론을 통해 최종 제재등급을 확정한다.



4. 제재등급 판정위원회의 심의위원Pool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 사내위원 : 운영·정비·보강·품질·시험 및 법무부서 3직급 직원
 - 사외위원 : 관련분야 전문가·종사자(산업·대학·연구 등 석사이상 학력 또는 자격증 또는 3년 이상 경력 보유자)
5. 사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이해충돌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당사 또는 심의대상 계약상대자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당사 또는 심의대상 계약상대자와 관련하여 최근 5년 내에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 그 밖에 당사 또는 심의대상 계약상대자와의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심의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질병, 사고 또는 국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 정부,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 그 밖에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7. 제재등급 판정위원회의 심의위원 및 참관인은 보안유지 및 비밀준수서약서(별표2)와 직무윤리 서약서(별표3)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위원회 주관부서는 다음의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참석자, 심의결과, 발언요지, 의결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9. 회의록은 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나 공개함으로써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은폐시 제재 가중제도)

① 계약상대자가 정전 또는 설비피해, 작업과실 유발 사실을 은폐하거나 사건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보고하였거나 미보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작업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제재수준을 가중 적용한다.

② ①항에 해당할 경우 제재등급을 1등급 상향하고 위약벌을 2배 적용한다. 제재를 가중 적용할 경우에는 위약벌에 대한 금액상한은 없다.

1. A등급 제재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회사), 근로자(인력)에 대한 입찰제한, 자격취소에 따른 등록불가기간, 공사참여제한 등 제재기간 또는 횟수를 2배 적용한다.

E4-4D-30-A2-D7-23 / 13103801 / 2024-12-19 15:37:25

2. 제9조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회사) 및 근로자(인력)에 대해서는 제10조의 제재 경감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가중적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항목만 적용한다.

제10조(제재 경감제도 운영) 당사는 우수기술력을 보유한 계약상대자(회사) 및 근로자(인력) 회생 기회 부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제재를 경감할 수 있다.

① B등급 또는 C등급 제재를 받은 계약상대자(회사)가 자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재기간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단, 제재기간이 경감 적용된 계약상대자가 제재기간 종료시까지 자체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을 미시행한 경우에는 제재경감을 무효로 하고 경감 전 제재기간을 적용한다.

1. 기술능력 또는 시공능력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분야는 평가까지 합격해야

제재경감 기회를 부여한다.

2. 기술능력 또는 시공능력 평가를 희망하는 계약상대자는 자격정지 후 1개월 내에 평가신청을 할 경우에만 기회를 부여한다. 평가에는 해당 제재건의 작업과실 유발 인력(제재 대상)은 제외하고 팀을 구성하여 참여해야 한다.
3. 평가에 합격한 작업팀이 제재기간의 50%를 경감받고 자격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시공하는 공사에는 당시 평가에 참여했던 인력의 50%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② B등급 또는 C등급 제재를 받은 근로자(인력)가 해당 작업인력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제재기간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1. 해당 작업인력과 관련된 교육만 인정하며 작업인력 등급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등급보다 하위등급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2. 교육과정은 자격연장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며 해당교육과정이 개설하지 않았을 경우 신규양성교육, 관련자격 기타교육 등 순으로 인정한다.
3. 교육과정 내 평가 포함시에는 평가까지 합격해야 제재경감 기회를 부여한다.

③ A등급 제재의 경우에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제재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개별계약의 업무기준 등에서 계약상대자(회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경감기준을 별도 운영 중인 경우에는 C등급 제재에 대해서만 해당 업무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 ①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그의 근로자는 상기 조항에 의해 당사의 조치가 있을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수용해야 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②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주요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사 전기안전관리규정, 송변전 고장관리기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정책 변경에 따라 정전, 설비피해 등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작업과실 예방을 위한 당사의 정당한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정전고장, 설비피해 등 발생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⑤ 계약상대자와 그의 근로자 등에 대한 제재 이력관리는 각 분야별 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



보안유지 및 비밀준수 서약서

본인은 한국전력의 '(사업명 또는 심의안건)'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지득한 사실, 정보 및 자료를 일체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본인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심의과정에서 지득한 사실, 정보 및 자료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을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F4:005-90-A2-D0-23 / 13103801 / 2024-12-19 15:37:25

20__년 __월 __일

서약인(심의위원)

자 료 : 제재등급 판정위원회 심의자료 - # 번

소 속 :

직 책 :

성 명 : (인)

한국전력공사 사장 귀하

【별표3】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제재등급 판정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별표4】

'00년 제 0차 ○○○ 위원회 회의록

일 시 : '00. 00. 00 (), 00:00

장 소 : 000호 회의실

안 건

번 호	안 건 명

심의결과 :

○

참 석 자

○ 위원장

○ 위 원

○ 간 사



F4-4D-30-A2-D7-23 / 13103801 / 2024-12-19 15:37:25
